

(주)엑스퍼넷 반부패 윤리경영 규정

- 제 1 장 총칙 -

제 1조 목적

(주)엑스퍼넷 반부패 윤리경영규정 (이하 ‘본 규정’)은 (주)엑스퍼넷 (이하 ‘우리회사’) 및 (주)엑스퍼넷 임직원(이하 ‘임직원’)의 윤리적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.

제 2조 적용범위

본 규정은 우리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 임직원까지 적용한다.

- 제 2 장 고객만족 -

제 3조 고객만족

- ① 우리회사는 고객사에게 최고의 IT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.
- ② 고객사의 영업기밀 및 개인정보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전 합의된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, 사용한 후에는 즉시 폐기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기타 채널을 통해 고객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사와 관련된 모든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않는다.
- ④ 우리회사는 고객과의 모든 거래를 상법상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의거하여 진행하며, 어떠한 위법행위도 좌시하지 않는다.

- 제 3 장 임직원 상호존중 -

제 4조 상호존중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 전원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안전하고 보람찬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한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모두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누구나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보상을 대우받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윤리의식을 준수한다.
- ④ 우리회사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.
- ⑤ 우리회사는 일에 대한 능력과 상관없이 장애, 성별, 인종, 문화, 종교적 배경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제 5조 규정준수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업무상/비업무상 사회 통념상 위반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대표이사 주도하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④ 우리회사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-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일체
 - 직장에서 음담패설 혹은 기타 음란행위 일체
 - 직장 동료의 신체에 성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행위 일체
 -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 일체
- ⑤ 우리회사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신체적/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의지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⑥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.
 -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-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-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 하는 행위

-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-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-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-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
 -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⑦ 앞서 나열된 행위 이외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.

제 8조 신의성실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한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항시 업무상 위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, 문제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부서 상호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.
- ④ 우리회사 임직원은 상호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우리회사 임직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강압적으로 과다한 부조를 독려하지 않는다.
- ⑥ 우리회사는 임직원간 금전대차 및 신용보증 등의 금전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.
- ⑦ 우리회사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중독성 게임 및 불건전한 웹사이트 접속, 도박 등을 하지 않는다.

제 9조 회사의 유·무형자산 보호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회사 유무형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는 회사와 관계 없는일에 자원을 사용 혹은 대여하지 않는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비롯 회사 영업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(타 회사 지식재산권 포함)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비인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
제 10조 능력개발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항상 자기개발에 힘쓴다.
- ② 우리회사는 임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을 회사 임직원과 함께 공유한다.

- 제 4 장 공정거래 -

제 11조 부정청탁 금지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공직자를 비롯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공직자를 비롯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사회 통념상 위배되는 수준의 금품이나 향응, 접대,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12조 주주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

우리회사 및 임직원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.

제 13조 이해상충방지

우리회사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자신의 역할,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등 우리회사와 주주,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품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17조 재무건전성

- ① 우리회사 재무담당자는 회사의 경영현황 및 재무상태를 관련 법규와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작성, 공시한다.
- ② 우리회사 재무담당자는 고의로 재무공시 내용을 조작하거나 날조하지 않는다.

제 18조 내부거래 금지

우리회사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자신의 역할, 지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영업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그로인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다.

제 19조 환경보호

- ① 우리회사 임직원은 지구환경과 이상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우리회사 임직원은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노력을 회사 안팎에서 적극 이행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초래되거나 오염물질 배출 위험을 항상 경계하고 친환경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20조 사회공헌

- ① 우리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환원 책임을 다한다.
- ②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.
- ③ 우리회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일체 삼간다.
- ④ 우리회사는 지속적인 고용확대로 국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.

제 21조 다양성존중

우리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상 마주하게 되는 국가/지역별 특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며, 해외 사업 진출 시 각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다.

제 22조 정치활동의 자유

우리회사는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. 임직원간의 정치선동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.

제 23조 안전관리

- ① 우리회사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,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안전·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-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- ② 각 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우리회사 임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24조 신고자 보호

- ① 본 규정에 반하는 행위 일체에 대해 우리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경영지원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경영지원본부는 수일 내로 자체 경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신고자와 공유하여야 한다.
- ③ 경영지원본부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④ 경영지원본부 신고 채널은 다음과 같다.
 - 이메일 : jhlim@expernet.co.kr
 - 전화 : 02-2050-5100
 - 팩스 : 02-6330-1505
 - 우편 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-21 E&C벤처드림타워 3차 609호
경영지원본부장 앞

제 25조 포상 및 징계

- ① 우리회사 반부패 윤리경영 규정 준수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.
- ② 우리회사 반부패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적법할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수준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.

제 26조 해석기준

- ① 본 규정은 (주)엑스퍼넷 취업규칙 및 정관을 제외,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한다.
- ② 본 규정에 열거되어있지 않거나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사회 통념상 준법정신에 의거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한다.
- ③ 본 규정이 적용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우리회사 임직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
제 27조 개정

본 규정의 개폐는 우리회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- 부 칙 -

제 1조 시행시기

- ①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소급적용 금지

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